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리 규정

제정 2006. 12. 20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예규 제3호

개정 2012. 4.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수행연구”라 함은 연구원에서 자체 확보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2. “공동수행연구”라 함은 연구원 이외의 관련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기관 또는 외국과의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원내 연구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연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연구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결과의 종합평가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아래에 자체 원내연구심의위원회(이하 “원내위원회”라 한다)와 보건, 축산, 환경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원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연구계획 등 연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 계획 및 결과의 심의·평가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 원내위원회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결과의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의 추진 사항
 3. 기타 분과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원 및 임기)

- ① 원내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보건·환경연구부장, 축산물위생검사소장과 각 실·과장으로 한다. 보건 및 환경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각 연구부장, 축산물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이 되며 각 분과 위원은 해당분야의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5>
기타 필요시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인원을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원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원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의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 ③ 삭제 <2012. 4. 5>

제8조(연구과제의 심의, 연구계획의 변경, 진도 및 결과의 평가)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받아 연구과제를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행 전 연도 9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연구사업 세부시행 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행 전 연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연구과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각 분과위원의 심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우수하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보통이상의 과제를 1차 원내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2차 원외 심의 평가를 거쳐 최종과제로 확정한다.
3. 외부 공동 수행 연구과제는 주관 부서의 연구추진 일정에 따른다.
- ② 각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연구수행 중에 연구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기별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연구진행상황은 1분기, 2분기, 3분기 보고서 작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5>
2. 4분기의 연구진행 상황 보고는 보건환경연구원보 투고 및 발간규정에 따라 작성된 연구사업 최종결과보고서로 대체하며, 최종결과보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요약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2년 이상 계속 되는 연구과제로 다음해에 마무리되는 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해서는 원내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일정에 의한다. <개정 2012. 4. 5>
- ④ 분과위원은 연구사업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한 연구결과 평가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 4. 5>

제9조(의견청취) 원내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제8조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의 책임연구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조치) ① 분과위원장은 과제의 책임연구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원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 ② 원내위원회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주무부서(실)의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 4. 5>
- ③ 간사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원내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연구결과의 발표 및 투고) ① 모든 연구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4조 2호의 종합심사·평가 결과 보통이하의 평가 시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보건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또는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5>
- ③ 원장은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게재료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원외 연구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원외 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다음해 수행 예정으로 공모하여 수립된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에 대한 외부평가 등을 위하여 원장은 외부전문가를 분야별로 1인 이상 구성하여 원외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원외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2. 4. 5>

제14조(기능 및 임기) 원외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4. 5>

1. 공모 연구사업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결과의 종합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2. 4. 5>

제15조(회의운영) 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상반기는 전년도 연구사업결과의 종합심사·평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하반기는 다음해에 수행 예정으로 공모된 연구사업 계획의 심사·평가를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개정 2012. 4. 5>

- ② 원외 연구심의는 서면심의 또는 서면심의 후 회의개최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2. 4. 5>

제16조(수당 및 여비지급) 원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등을 평가한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지급) 원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등을 평가한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실적 등의 평가 및 평가 성적의 반영

제17조(연구실적 등의 평가) ① 원장은 연구실적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당해 년도 중에 제출된 최종연구결과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배점기준은 연구결과물 심의평가서 원내(별지 제5호 서식)·원외(별지 제 8호 서식)에 의거 각각 50퍼센트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하고, 평가 시기는 다음해 2월 중으로 한다. <개정 2012. 4. 5>

제18조(평가 성적의 반영) ① 원장은 우수 연구자에 대한 평가 성적을 근무성적평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조정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각종 포상 및 해외기술훈련 대상자 추천 시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평가 성적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9조(부실연구자에 대한 조치) 삭제 <2012. 4. 5>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2. 4. 5>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사업 계획서

□ 수행부서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구성원)												※참여율(%)기재
총 연구기간												
세 부 추 진 내 용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추진 일정	내용	월 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사업 세부실험 시행 계획서

1. 제목

2. 연구목적

3. 연구개요

가. 연구기간 :

1) 문헌조사 :

2) 시료채취 및 분석 :

- 6~9월 : 월 ○○회,

- 기타 : 월 ○○회

3) 보고서 작성 :

나. 조사지점 :

다. 조사항목 :

※ 조사항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

4. 연구구성원 : 책임 연구자, 공동연구자

직 책	성 명	임 무
책임연구자 (연구관/연구사)		
공동연구자 (연구관/연구사)		
공동연구자 (연구관/연구사)		

5. 연구내용

6. 세부추진일정

사업내용(예)	200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문헌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보고서 작성												

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 기타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사업 과제선정 평가서(원내 심의 평가용)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수행부서	
연구책임자 (성명/소속)	
총 연구기간	
평가점수	

위 연구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I. 연구사업 과제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과결과(“○”)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이 연구의 필요성 및 적절성은?	10	10	9	7	5	4
2. 연구목표 설정의 명확성은?	10	10	9	7	5	4
3. 연구과제의 공익성 및 시민생활 기여도는?	10	10	9	7	5	4
4. 연구과제의 창의성은?	10	10	9	7	5	4
5. 연구방법의 타당성은?	10	10	9	7	5	4
6.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10	10	9	7	5	4
7. 연구결과와 관련분야 활용도 및 기대효과 정도는?	10	10	9	7	5	4
8. 연구과제의 전문성 및 학술적 가치는?	10	10	9	7	5	4
9.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적구성의 적합성은?	10	10	9	7	5	4
10. 연구내용 및 방법을 고려할 때 과제 수행일정의 적절성은?	10	10	9	7	5	4
평가점수	(합계100)					

※ 표기는 해당란에 ○으로 표시하시고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등급	아주우수 (90점이상)	우수 (89-80)	보통 (79-70)	미흡 (69-50)	불량 (50점미만)	선정 기준
평가점수						우수이상 : 선정 보통 : 재심의 미흡이하 : 선정제외

II. 연구과제 수행 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 기타 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사업 진행상황 보고서(1, 2, 3분기)

과제명 (연구책임자)	세 부 추 진 내 역		
	계 획	실 적	진도율(%)
추진상의 문제점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결과물 심의 평가서(원내 심의 평가용)

분 야							
과 제 명							
수행부서			협조부서				
연구책임자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결 과					평가 점수
		아주우수 (10)	우수 (8)	보통 (6)	불량 (4)	아주불량 (2)	
1. 연구수행도 - 연구시기의 적시성 - 연구기간의 적절성 - 참여인력의 능력발휘도 2. 연구수행 방법 - 접근방법의 합리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시행계획서와의 부합성 - 독창성 및 과학기술적인 수준 3. 연구결과 - 연구목적의 달성도 -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기여도							
종합 점수	평가등급	아주우수 95점 이상	우 수 80점 이상	보 통 60점 이상	미 흡 40점 이상	아주 미흡 20점 미만	
종합의견							
평 가 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 종합점수 :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

[별지 제6호 서식]

국내·외 학술회의(지) 발표 국·영문 신청서

- | | |
|-----------|------------|
| 1. 소 속 : | 4. 학 회 명 : |
| 2. 직 급 : | 5. 발표일시 : |
| 3. 성 명 : | 6. 발표장소 : |
| 7. 발표제목 : | |

발 표 요 지	
---------	--

200 .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연구사업 과제선정 평가서(원의 심의 평가용)

연구과제명 :

I. 연구과제 평가서

평 가 항 목	배점	평과결과(“○”)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 가능성?	20	20	18	16	14	12
2. 연구과제의 시민생활 기여도는?	20	20	18	16	14	12
3.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도?	20	20	18	16	14	12
4. 연구과제의 창의성은?	20	20	18	16	14	12
5. 연구과제의 전문성 및 학술적 가치는?	20	20	18	16	14	12
평 가 점 수	(합계100)					

평가등급	아주우수 (95점이상)	우수 (94-85)	보통 (84-75)	미흡 (74-65)	불량 (65점미만)	비 고
평가점수						

II. 연구과제 수행 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 기타 의견

위와 같이 평가 함
 년 월 일
 평가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연구결과물 심의 평가서(원의 심의 평가용)

연구과제명 :

I.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결과(“○”)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연구결과물의 독창성?	20	20	18	16	14	12
2. 논지 전개의 타당성?	20	20	18	16	14	12
3. 연구결과물의 시민생활 기여도는?	20	20	18	16	14	12
4. 연구결과물의 정책 기여도?	20	20	18	16	14	12
5. 연구결과물의 전문성 및 학술적 가치는?	20	20	18	16	14	12
평 가 점 수	(합계100)					

평가등급	아주우수 (95점이상)	우수 (94-85)	보통 (84-75)	미흡 (74-65)	불량 (65점미만)	비 고
평가점수						

II. 심의 의견

위와 같이 평가 함

년 월 일

평가자 : (인)

[별지 제9호 서식]

연구사업 최종결과 요약 보고서(要約報告書)

제목 :

보건환경연구원 ○○○과

1. 연구개요

- 연구기간 :
- 연구대상 :
- 시험내용(항목) 및 방법 :

2. 연구결과

3.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건의

- 문제점
- 대책 및 건의

4. 기대효과

보건환경연구원보 투고 및 발간 규정

제정 2006. 12. 20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예규 제4호

세부규정 I. 보건환경연구원보 연구논문집 투고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 및 주요사업의 연구논문을 종합한 보건환경연구원보 연구논문집 발간에 관한 國文·英文논문의 투고 형식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투고자격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연구자는 본 연구원의 직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제2조(원고의 종류 및 내용) 원고의 종류는 원저(originals), 단보(notes), 속보, 총설(review)등으로 한다.

1. 원저(originals) : 보건, 축산, 환경등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결과로서 학술적·실용적 차원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결론 또는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단보(notes) : 보건, 축산물, 환경분야의 창의적이고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사실이거나 가치있는 자료를 포함하는 논문을 말하며, 체제는 원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속보(기술업무, 방역등 현장보고 자료) : 보건, 축산물, 환경분야의 업무관련 중요한 새로운 지견으로 가능한 한 빨리 게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속보로 투고할 수 있으며, 체제는 원저를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4. 총설(review) : 보건, 축산물, 환경 전문분야의 국내외의 조사데이터, 측정데이터 등이 나와 있는 논문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한다.

제3조(원고의 작성) 논문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쓰되, 국문의 경우 영문초록(Abstract)을 작성하고 다섯 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가 하단에 각각 첨부되어야 한다.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210×297mm)용지에 작성하되, 특별히 매수를 규정하지 않으며(휴면명조, 글자크기 11,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 여백 : 좌우 20, 위 20, 아래 15를 원칙)으로 하며, 약자는 쓰지 않고 정자로 쓴다. 영문일 경우 국문초록(요약문),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의 순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논문원고의 구성은 다음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 1) 제목, 저자, 소속(과), 초록(Abstract),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요약), 참고문헌 순
- 2) 저자(Author) - 저자가 1인 이상일 때(예 3인 : Gil-Dong Hong, Mi-Ja Lee and Bok-Dong Kim)
- 3) 소속과(Division) - 소속이 다를 경우 저자명 끝에 *, **표를 순서대로 붙이고 단어 첫글자를 대문자로하여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4) 초록(Abstract) - 논문의 목적과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표기방법

- 1) 생물의 고유명사는 제목, 본문을 막론하고 Italic체로 기술하되 첫자만 대문자로 표시한다.
예) *Shigella flexneri*
- 2) 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되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한다.
예) Table 1, Table 2, Fig. 1, Fig. 2등
- 3) 표(Table)의 경우 제목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설명은 고유명사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하여 표의 상단에 표기하고, 제목 끝에 마침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예) Table 1.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BOD removal efficiency
그림(Figure)의 경우 제목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설명은 첫 단어와 고유명사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하여 하단에 표기하고 제목 끝에 마침표를 붙인다.
예) Fig. 1.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BOD removal efficiency.
- 4) 도량형의 단위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 : S.I.)를 사용하며 숫자와 도량형 사이는 반드시 한 칸을 띄운다(예 : 2 m, 2 min).
단 %, 온도, 위도, 경도를 표시하는 단위는 숫자에 붙여 쓴다.
- 5) 한글 다음에 괄호는 스페이스 없이 사용하고, 영어 다음의 괄호는 한 스페이스 띄우고 사용한다.
예) 나는 간사(홍길동)에게 할 말이 있다.
I would like to say something to editor (Hong, Kil Dong).

제4조(참고문헌의 인용) 인용된 참고문헌의 기록은 다음 형식을 준수한다.

1. 참고문헌은 인용한 문장이나 저자의 이름 다음에 어깨부호(1)로서 표기하고 인용순서 순으로 기재한다
2. 단행본일 경우 저자명, 책명, 판수(초판일 경우는 제외), 출판사, 출판지명, page(소문자 pp를 붙임), 출판연도의 순으로 기입하며 연도는 ()를 한다. page앞에는 p를 쓰며 여러 page일 경우 pp.를 쓴다.
예) 5. 홍길동, 일반화학, 제3판, 부산출판사, 부산, p50(2003).
6. Herry, W. G. and McCan, M. E. : Laboratory methods in food and dairy microbiology. Academic press, London, pp.100~120(2003).
3. 학술지 논문(Journal Articles)일 경우 저자, “논문제목”, 학술잡지명(이탤릭체로 표기), 권수(권수는 굵은 글자로 숫자만 표기하며 호수는 괄호안에 가는 글자로 숫자만 표기), 면수(시작과 끝의 숫자만 표기), 연도(괄호안에 표기)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1. 홍길동, 김영희, “활성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 식품학회지, 15(5), pp.100~110(2001).
2. Herry, W. G., Field, R. and McCan, M. E., “Laboratory methods in food and microbiology”, Atmos Environ, 46(8), pp.72~88(2003).
4. Internet의 사이트를 인용할 경우, 저자(있는 경우), 사이트의 제목, URL, 게시년도(괄호안에)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1.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ome Page, <http://www.epa.gov>, July(1999).

세부규정 Ⅱ. 보건환경연구원보 조사보고서 투고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조사 및 주요사업의 결과를 종합한 보건환경연구원보 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투고 형식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투고자격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참여자는 본 연구원 직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제2조(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조사사업(Investigation paper), 기술(업무)자료(Technical Note), 방역 등 현장보고(Field Report) 등으로 한다.

1. 조사사업 : 보건, 축산물, 환경분야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방역, 위생, 환경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창의적이고 단편적인 조사결과로서 새로운 사실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기술(업무)자료 : 보건, 축산물, 환경분야의 업무관련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 새로운 사실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방역 등 현장보고 : 보건, 축산물, 환경 전문분야의 현장보고 및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원고의 작성) : 원고작성은 원고 종류에 따라 적절히 작성하되 A4(210×297mm) 용지, 위 : 26.0, 머리말 : 10.0, 원 오른쪽 : 25.0, 아래 : 23.0, 꼬릿말 : 0로 하여 다음 조사사업보고서 서식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다.

세부규정 Ⅲ.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에 관한 규정

제1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간사1명 외 총무과, 가축위생시험소, 농산물검사소 2 곳에는 각 실무책임자 1인을 둔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구성체제 및 분량 검토·조정
2. 원보의 지질, 활자 등 결정
3. 원고의 최종 교정 등

제3조(원고의 교정) 원고 교정의 초교는 저자가, 재교정부터는 편집위원이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정중의 내용변경을 되도록 피한다.

제4조(원고의 게재) 원고의 내용구성상 본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게재할 수 있으며 원고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기타) 기타 투고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조사사업 보고서 서식

인플루엔자 유행예측 조사

HY울릉도M 18p, 장평87% -3

- 인플루엔자 유행의 조기 탐지 및 바이러스 분리주 특성 조사
- 신종인플루엔자 조기검색, 역학자료 추적, 언론홍보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HY중고덕 11p, 장평 100%, 원·오 5, 행간 130%

1. 조사개요

HY태고덕, 12p, 장평 100%, 행간 160%

- 조사기간 : 2005. 1. ~ 2005. 12.
- 조사대상 : 내원한 급성호흡기 환자의 인후도찰물, 콧물, 기관지세척액

본문: 신명조 10.5p, 들어쓰기 10(space×), 장평 100%, 행간160%

2. 조사방법

- 인후도찰물, 콧물로 RAT(신속진단시험)에 의한 조기 검색
- 검체를 전처리한 후 MDCK 세포에 접종하여 원인바이러스 분리, HA(혈구응집 반응) 시험
- 인플루엔자 A/H3N2, A/H1N1, B형 확인을 위한 PCR 시험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 확인 시험은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

3. 조사결과

- 협력병원에 내원한 급성 호흡기 감염환자 1,579명의 인후도찰물, 콧물로부터 21건(1.3%)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분리
- 월별 분리현황 : 12월부터 4월까지 분포하였으며, 2월과 12월에 각각 5건(8.5%), 9건(3.6%)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1, 그림 1).

표 1. 월별 분리 현황

HY태고덕 9.5p, 장평95%, 자간-6, 행간 160%(그림제목과 동일 단, 표타이틀 왼쪽정렬, 그림 가운데정렬)

표두께0.25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검사건수	1,579	150	59	75	164	247	109	124	95	92	102	112	250	
양성건수 (%)	21 (1.3)	4 (2.7)	5 (8.5)	1 (1.3)	2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3.6)	
표 이증산	인플루엔자 A/H1N1	1												1
	인플루엔자 A/H3N2	17	4	5										8

표안: 신명조 9.5p, 자간 -6행간130%, 가운데 정렬

4. 결론

담당부서 :
과장 :

담당자 :

HY울릉도M 8p, 행간130%